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범국민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및 제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추모위원 위촉서

귀하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범국민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및 제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추모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은 조국과 민족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였기에 분신, 투신 등으로 하나뿐인 고귀한 목숨을 바쳐 가며 독재와 악덕기업주에 항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동료들을 보호하다가, 공권력의 최루탄과 쇠파이프에 맞아, 죽음에 처한 동료들을 구하고서, 병고칠 틈도 없이 한 평생 운동에 헌신하다가 운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된 뒤 사고사나 자살로 위장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운명하신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4·19, 5·18희생자들을 제외하고 331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투쟁의 최 정점에 항상 열사·희생자들이 계셨습니다. 이 분들의 희생으로 조국과 민족은 어둠에서 벗어나 차츰 밝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은 국가유공자 지정 등의 명예회복은 고사하고 아직도 범법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작고하신 문익환 목사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루고자 했던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사업회를 결성하고, 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가장 원칙적이며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범국민 차원에서 중심을 잡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하여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기념관, 기념탑 건립 사업, 묘역 성역화 사업, 국가기념일 제정 사업, 국정교과서에 수록하는 등의 역사 재평가 사업, 유가족 지원 사업, 연구 사업 등의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치러온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가 화를 거듭하여 9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해마다 크고 작은 난관이 있었지만 열사·희생자들을 위한 정성들이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범국민추모제는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마지막 날인 9월 19일에 갖게 됩니다.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범국민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및 제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추모위원 기금은 3만원 이상입니다. 가입 신청서는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고 기금은 온라인 송금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범국민추진위원회 ·

우)110-542 종로구 창신2동 651-30 (전화) 02-742-3180, 02-764-1684 (팩스) 02-742-3181, 02-743-2835

국민은행 807-21-0462-833 농협 027-12-089168 신한은행 218-12-047067 우체국 010793-0123845 (예금주 이창복)

----- 절친선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범국민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및 제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추모위원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직장		성별	
직장 전화		자택 전화	
우편물수취주소	우(-)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
	B12-5 70

인권정보자료실
CPb1.12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열사 호칭 구분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 일시 : 1998년 9월 14일 (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앞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02-921-4092)

인권정보자료실
CPb1.12

식

순

1. 사 회 / 손석춘 (한겨레노조위원장 겸 언노련위원장 권한대행)
2. 개 회 선 언
3. 인 사 말 / 배은심 (유가협 회장)
4. 발 제 1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호칭상의 구분과 각각에 대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방향 / 한충목 (일시범추위집행위원장)
5. 발 제 2 : 의문의죽음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민족민주유공자명예회복및예우에 관한 법률(안) / 이상훈 (변호사, 민변)
6. 지 정 토 론 / 이상수 (국민회의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7. 중 합 토 론
8. 방 청 인 질 의 및 토 론

11월

..... 자료집차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호칭상의 구분과 각각에 대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방향 / 한충목 ... 2
- 의문의죽음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민족민주유공자명예회복및예우에 관한 법률(안) / 민변 ... 12
- 첨부자료 1 - 연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신분별 분류 ... 30
- 첨부자료 2 - 연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 형태 분류 ... 32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호칭상의 구분과 각각에 대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방향

한충목·열사범추위 집행위원장

1. 들어가는 말

우리 민족의 역사는 외세와 독재, 그리고 자본과의 투쟁의 역사이다.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애국 인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산화하였다.

60년대 이래 지금까지 4·19, 5·18열사를 제외하고 331분이 산화하였다. 이 분들의 삶은 개인의 이익을 구하여 살아온 삶이 아니라 동료와 조국,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살아온 아름다운 삶이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든 숭고한 죽음이었다.

우리는 이분들을 통칭하여 열사·희생자로 불렀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기관지 '열사회보'에는 일괄하여 동지로 호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이 갖는 의미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민족민주운동 내에서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산화하신 이후에도 아직까지 과거 독재 정권이 씌워 놓은 범법자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국가에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 때에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에 대한 호칭상의 구분과 그에 따른 명예회복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통칭하여 민족민주열사·희생자로 통칭되어 온 호칭에 대한 구분 방향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명예회복 방향을 제안하기로 한다.

이 글을 작성하며 어려웠던 점은 현대에서의 의·열사에 대한 연구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기초 자료가 부족하였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발제자 본인이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어서 관련 지식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글은 민족민주운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써 제 운동 세력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호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2. 호칭에 대한 구분을 제안하며

1) 해방 전 의·열사에 대한 호칭

선조들은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다.

의·열사들의 투쟁은 일제에게는 테러라 폄하되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었고 탄압받고 있는 국민들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준 열사, 유관순 열사, 이봉창 열사, 장인환 의사, 전명운 의사, 안중근 의사 등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의·열사들 중에 몇 분이다. 이 분들의 죽음의 형태는 자결과 옥사, 그리고 일제에 의해 사형된 경우도 있다. 이것으로 보면 열사와 의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죽음의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국어사전에 나타난 각각의 호칭이 갖는 의미

의·열사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열사의 의미와는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는 최현대사에서의 열사의 의미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사 (烈士) :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절의(節義)를 굳게 지키며 싸운 사람.

의사 (義士) : 의로운 뜻이 있는 지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한 애국 열사.

지사 (志士) : 기개가 높고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여 제 몸을 희생해서 일하려는 포부가 큰 사람.

투사 (鬪士) : 사회 운동 등에서 정의를 위해 활약 투쟁하는 사람.

3)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호칭 구분 제안

해방 이후 열사라는 호칭이 통용된 된 계기는 4·19열사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청계천에서 한 노동자가 분신하였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우리 운동의 카타란 흐름을 만들어 내었고 열사의 호칭이 사회 저변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후에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정권과 문민독재라하는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가장 치열한 항거인 분신, 할복 등의 투쟁이 있따르면서 열사라는 호칭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면서 위 1에서와 같이 호칭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열사·희생자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두고 호칭상의 구분을 하고자 한다.

열사 (烈士)

① 개인의 문제로 비관하여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동료와 조직, 나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분신, 투신,

할복 등의 방식으로 산화한 경우. (전태일)

② 민족민주 운동 과정에서 독재와 자본 등에 의해 살해된 것이 명백한 경우. (백봉향)

③ 투쟁 과정 중에 운명한 경우. (이한연, 강경애)

지사 (志士)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지만 한 평생 운동에 매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분이 병이나 사고로 운명한 경우. (지사와 투사의 구분은 민족민주운동에 매진한 기간, 공적, 역할,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의리관, 투사,

투사 (鬪士)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지만 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운명할 때까지 운동에 매진하다가 젊은 나이에 운명한 경우. —최영선—

의사 (疑士)

운동 과정 중에 안기부, 대공분실, 기무사 등 독재정권의 폭압기관이나 자본에 의해 살해된 뒤 자살이나 사고사, 병사로 은폐되어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로 지금까지 의문의 죽음 또는 의문사로 불려졌으나 이는 호칭으로 적합하지 않았음. 이 경우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 후 위의 구분에 따라 재구분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임.

3. 구분에 따른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방향

1) 현행 국가보훈법령 체계

법률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라. 보훈기금법

마. 한국보훈복지공단법

- 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 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아.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 자. 군인보험법

대통령령

- 가.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 나.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시행령
- 다.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마. 보훈기금법시행령
- 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
- 사.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아. 군인보험법시행령
- 자. 국가유공자기장령
- 차. 국립4.19묘지규정

총리령

- 가.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나.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라.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마.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 바. 국립4.19묘지시행규칙

이 중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과 연관이 있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예우의 기본 이념, 국가의 시책, 대상자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第1條(目的) 이 법은 日帝로부터 祖國의 自主獨立을 위하여 공헌한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에 대하여 國家가 應분의 禮遇를 함으로써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의 生活安定과 福祉向上을 도모하고 나아가 國民의 愛國精神을 함양하여 民族正氣를 宣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禮遇의 基本理念)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계승한 우리 大韓民國은 獨立有功者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들에게 송고한 愛國精神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의 榮譽로운 生活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報償이 이루어져야 한다.

第3條(國家의 施策) 國家는 獨立有功者의 愛國精神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民族正氣를 宣揚하며, 第2條의 基本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한다.

第4條(適用對象者) 다음 各號의 1의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이 법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

1. 殉國先烈 : 日帝의 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年 8月 14日까지 國內外에서 日帝의 國權侵奪을 반대하거나 獨立運動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殉國한 者로서 그 功勞로 建國勳章을 받은 者
2. 愛國志士 : 日帝의 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年 8月 14日까지 國內外에서 日帝의 國權侵奪을 반대하거나 獨立運動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者로서 그 功勞로 建國勳章을 받은 者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물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송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재(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7의2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
8.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 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재(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를 제외한다)
9. 4.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0. 4.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1.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재(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12.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하여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2)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방향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방향은 크게 보아 네 가지 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 째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목숨을 바쳐가며 이루고자 했던 염원들을 살아남은 우리들이 실현하는 일로써 명예회복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방향이다.

둘 째는 지난 시기에 외세와 독재정권, 그리고 약덕 자본가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그들이 썩어놓은 범법자의 굴레를 벗겨 내고 국민들에게 송양 반도록 하는 일이다. 이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투쟁 과정 중에 관련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정당한 역사의 평가를 이루어내는 것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에게 저촉시킨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의 악법 개폐,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였던 독재 정권의 폭압기구인 안기부, 대공분실, 기무사의 해체와 국민을 위한 국가기구로 재편하는 일이다.

셋 째는 독재 정권의 폭압기구와 약덕 자본가들에 의해서 살해된 뒤 자살이나 사고사로 은폐된 의문의 죽음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루어 내는 일이다.

넷 째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숭고한 삶과 죽음을 길이 후손에게 전하는 국가 차원의 기념 사업을 전개하는 일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관련 악법들이 개폐되어야 하고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남아공이나 남미의 여러 국가의 경우에서처럼 '진실과 화해 위원회'이거나 '외국된 역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과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이 고려된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운명하신 때는 길게는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경우 현행 법상으로 공소 시효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나치 전범에 대한 심판과 진상 규명을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인류에 반한 죄'나 UN이 제정한 '인도에 관한 죄'처럼 공소 시효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난 시기 진상 규명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수사권의 문제이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을 살해한 그 당사자들에게 수사권을 맡기게 되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겨 놓는 격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위상은 안기부, 대공분실, 기무사, 검찰,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까지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완전 해결될 때까지 아무도 해산할 수 없도록 특별위원회 전원 합의에 의해서만 해산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특별위원회의 조사작업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은 물론 독재정권 아래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들과 행방불명된 사람까지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관할 부서와 유가족 대표와 시민사회단체대표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호칭상의 구분에 따른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방향

특별법과 특별위원회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면 현행 국가보훈 법령을 참고로 하여 '민족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에 따른 구체화이다.

위의 1)에서 보듯이 현행 보훈법령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이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지라도 역대 독재정권과 항거를 하는 과정에 온몸을 던져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산화하신 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이에 근거한 예우는 마땅한 일이다. 현행보훈법을 체계 내에서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50년 만의 정권교체를 실현함으로써 과거 정권과는 일정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 법률의 개정보다 오히려 현행 보훈법령을 참고하여 새로운 법률인 '민족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의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의 구분처럼 호칭상의 구분에 따라 예우를 함이 마땅할 것이다.

- 요역 서역화
- 3가기념일 제정.
- 열사전당 (유공호, 자료) 세우기
- 포라서 제재
- 하악 차령의 서훈식
- 명예 제부
- 특별법 - 특별위원회 ~~제정~~ 구성.
- (수사권 포함)
- 남아공 - 진실과 화해의 연 위원회

발제 2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안)

윤기원 · 민변, 변호사
이상훈

법안 1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① [특별검사권
진상규명위원회,
강제수사권, 영장청구권이 유,
→ (특.경) → 공소제하가 지난 사건, 난항
→ 위원회로. (11조)]

1. 입법취지

그동안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중 그 사인에 의심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그 진상은 역사속에 매몰될 처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정부가 출현함과 맞추어 더 이상 진실을 과거에 묻지 않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한다.

2. 주요골자

0. 의문사란, 사인이 명백히 자연사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한 것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정의(법제2조)

0. 대통령직속하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 각 3인씩 선출(법제3조)

0.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대상사 선정, 고발, 영장청구요청, 재정신청여부 등을 결정(법제4조)

0.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요청 및 소속공무원의 파견등을 요청할 수 있음(법제7조)

0.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음(법제8조)

0. 위원회가 관할 지방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는 이를 관할 지방 법원에게 신청하여야 함(법제9조).

0. 사건조사기한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정(법제10조).

0. 위원회는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를 검사등에게 고발하여야 하고, 명백한 자연사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 민족민주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민족민주열사의명예회복및예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함(법제11조).

0. 검사등이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관할 고등법원등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함(법제12조).

0. 자수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며, 내부정보제공자의 신변보호장치 마련(법제13조, 제14조)

0. 이 법이 만료된 이후부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법제15조)

0.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벌칙조항 마련(법제16조)

3. 전문(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의문사한 자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그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의문사"라 함은, 사인이 명백히 자연사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

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대통령은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3월내에 대통령 직속하에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위원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⑤ 기타 위원회의 조직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직무범위)

위원회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진상 규명을 위한 대상자 선정
2. 고발, 영장청구 요청, 재정신청 여부의 결정
3. 민족민주유공자명예회복과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사요청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5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전조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률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
- ② 위원중 5인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독립)

-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른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8조(보수 및 경비)

위원의 보수 및 위원회의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사협조요청등) → 강제수사권

-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안기부장, 기타 관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전 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증거조사)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감정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영장청구요청)

-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당해 사건의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보고)

- ①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위 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 3월마다 대통령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처리)

- ① 위원회는 조사결과 명백히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자를 검사 또는 검찰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 명백한 자연사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 민족민주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의 경우 '민족민주유공자의 명예회복및예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신청의 예외)

- ① 위원회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 시행전에 이 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형의 감면)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위원회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

제1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이 법률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보하였거나 하려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기간동안 전항의 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등 잠정적 구제조치를 할 수 있고, 제공자도 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공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기관에서는 제공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의문자의 진상 규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공소시효의 예외)

- ① 이 법이 발효된 이후부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② 이 법 제2조의 규정된 의문사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이 법률을 적용한다.

제18조(벌칙)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위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 제1항, 제2항의 요청에 불응한 자.
-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 및 증언요구를 거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안 2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

1. 입법 취지

1945. 8. 15. 해방이후 민족민주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사건별로는 명예회복 및 예우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예컨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9호, 10호에 규정된 4. 19혁명 사망자, 4. 19혁명 부상자에 관한 규정, 5.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등) 대부분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된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분들에 대하여 시급히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법안의 제목에 관하여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민주유공자, 민주화운동관련자등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민족민주”라는 용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민족민주유공자”라는 용어를 선택함

나. 민족민주유공자를 시기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있어서 1945. 8. 15. 이전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1945. 8. 15. 이후로 제한하였고 앞으로도 민족민주유공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기는 제한하지 아니함(제1조)

다. 민족민주운동의 정의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함(제2조1항)

라. 민족민주운동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라도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지 아니하였다면 사망자에 한하여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제2조 2항 3호) [사망자 - 제사, 특사, 사상자]

마. 의문사한 자도 포함시키되 다만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요청한 자에 한하여 포함시킴(제2조 2항 4호)

바. 유족의 범위, 등록 및 결정, 예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준용하기로 함(제3조, 4조, 16조)

사. 보상은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함

아. 민족민주유공자에 대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통일에 역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선언적인 규정으로 그쳤고 위와같은 행위시 보상금 지급 금지 등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음(제7조)

자. 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3인씩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유족대표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중 일부를 유족대표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아니함(제9조)

차. 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도 협조하도록 하였음(제10조)

카. 민족민주운동을 이유로 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1조)

타. 요시찰인 명부 작성등 불이익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었음(제12조, 21조 1항)

파. 정부의 기념사업 추진의무를 규정하였고 추진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미루었음(제14조)

하. 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두었음(제15조)

거. 보상금의 환수등 보칙에 규정된 내용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음

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제 1조)

3. 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 8. 15. 이후 민족민주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되었거나 민족민주운동에 공헌한 자(이하 "민족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민족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민족민주운동"이란

2. 이 법에서 "민족민주 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8조의 규정에 의한 민족민주유공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 법에 의한 적용을 받도록 결정된 자를 말한다.

(1) 민족민주운동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2) 민족민주운동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3) 민족민주운동에 특별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자
- (4)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6조 2항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심사를 요청한 자

제3조(유족등의 범위)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민족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를 적용한다.

제4조(등록 및 결정)

1. 민족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족민주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조에 의한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3. 민족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2항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후에 민족민주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원칙)

민족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민족민주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7조(반민족민주행위 금지 의무)

민족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8조(민족민주유공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1. 민족민주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민족민주유공자 및 유족결정에 관한 사항
- 나. 민족민주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다. 민족민주유공자 추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라. 민족민주 운동을 이유로한 불이익행위의 판정 및 고발
- 마. 이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의결사항
- 바. 기타 보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3인은 국회가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자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검증 또는 필요한 자료를 조사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명예회복

제11조(특별재심)

1. 민족민주운동을 이유로 한 유죄의 확정판결(다른 범죄와 경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3. 재심관할법원은 재심이 청구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면이 있었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등재심의 성격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제12조(불이익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민족민주운동을 이유로 타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 요시찰인명부의 작성, 여권발급절차에 있어서의 예외적취급규정등 차별대우(이하 불이익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불이익 행위 여부의 판정등)

1. 민족민주운동을 이유로 불이익행위를 당한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불이익 행위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불이익행위의 판정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불이익행위로 인정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4조(기념사업)

1. 정부는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민족민주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묘역성역화 사업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1항의 기념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등)

1.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민족민주유공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사업비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서훈의 추천요청)

1. 위원회는 민족민주 유공자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서훈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로부터 서훈의 추천을 요청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자에 대하여 상훈법 제12조에 규정된 국민훈장이나 상훈법 제21조에 규정된 국민포장의 서

훈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장 예우

제17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의 적용)

민족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장 내지 제7장을 준용하되 제2조 제1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민족민주유공자는 “전몰군경”의 예에 따라,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민족민주유공자는 “전상군경”의 예에 따른다. 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9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보상금의 환수)

1. 국가보훈처장은 이법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학자금(법제 1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학자금을 포함한다.) 법제17조의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한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3) 잘못 지급된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 보상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환수 또는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상금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시효)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위탁)

1. 이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2조(벌칙)

1. 제12조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0조 제2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위원회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로 신고를 한 자 또는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 이상식 / 북극령과 송구스런 느낌을 받았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 이 현실이 안타깝다.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민족의 경향이 있는데

국민 생활 가치 [~~경제~~ 경제회생 개혁
민중화 운동

법안은 중요하지만 근본적 문제가 있다 (가치관 해체, 공동체 의식, 민족의 상실)

가정이 파괴되어서 꺼져와 되어 가고 있다.

또한 한 개인도 분열화 되어서 국도의 가치 파괴가 이루어 지고 있다.

민중화에 대해서도 가치가 흐려지고 있다.

역사는 현재의 가치에서 바라보는 것 → 민중화 가치가 흐려진 거

최후도 각자가 따로 논다. 의견충돌 운동권 출성이 많지만 모두 땅의 당락에 매여 있어 단결이 X.

위원회 구성 단계 → 제23조내 인사 약속 포함 → 힘겨루기

입법안 상정 → 초안 가결시 입법이익은 생기지만 그건 입법은 아니다.

위원회가 힘을 발휘해야 한다.

첨부자료

당의 이름으로 나가야 쉽게 통과 된다.

강력한 범추위의 결성이 우선 되어야 당론화 시킬수 있다.

첨부자료 1

국회에 들어가면 이 문제를 해결위해 최선을 다할 것.
연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신분별 분류

법안은 잘되어 있지만 범위가 만드는 것이 우선.

첨부자료 2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었는데
연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 형태 분류

문제가 있는데 처벌은 못해도

조사는 가능하다.

지난 것은 조사에 그치려라도 남는 것은 확실한 처벌.

위원회보다는 특별 검사 제를 두어서 확실한 처벌을 하는 것이 좋겠다.

[소변출] : 범추위로 책임이 넘어왔다.

민노총 허명구.

첨부자료 1

희생자에 대한 이양수 배분 / 정부 정책 ; 두개의 가치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
 노동자의 희생하에 자본의 발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과 노동의 공존하에 자본의성이
 가능하다면 민족화외의 양립도 가능하다고 본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매대가 아닌 서로 주고 받는 관계 성립. **년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의 신분별 분류

1998. 5. 22 현재

	노동자	학 생	농 민	빈 민	시 민	재 야	장 기 수	군 경	합계	
박 정 희 정 권	1960년대						조봉암 최백근 조용수 최근우 정순중 박재복 권재혁 김종태 최영도 이문규 정태목 손순남 윤성만 이양섭 최중천 최한우 하상혁 황대현		18	
	1970	전태일					권오금		2	
	1971	김진수					김대석		2	
	1972						고봉을 이연승 한태갑 한현수		4	
	1973					최종길	김영한 김태신 김영호 초인국		5	
	1974						김태원 박운엽 배학수 윤종하 이동근 현영현		6	
	1975		김상진			장준하	김용원 도예중 서도원 이수병 송상진 하재환 여정남 우홍신 장석구 기세일 신춘복 하야창		14	
	1976						공재용 김규호 김용철 정영춘		4	
	1977						김경익 김규호 김용철 정영춘		4	
	1978		정법영				박정래 이훈동 탁해섭		4	
1979	김경숙					손순영 송순희 임창규		4		
소 계	3	2			2	60		67		
전 두 환 정 권	1980	김종태	김의기			임기문	김규창 김승운 김용신 변형민 노천도		8	
	1981		김태훈 최중철				이재문 최점수		4	
	1982					문영수	신형식	정성희	3	
	1983		황정하				신창길	이문섭 김두환 한영현 최은순 한희철	7	
	1984	박종만					허원근		2	
	1985	홍기일	기 혁 우종원 송광영				이용문 황필규		6	
	1986	박영진 변형진 신호수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박해정 이경환 김성수 진성일	오한섭		김상원	강상철	전재권 강동창	15	
	1987	이순덕 황보영국 김현욱 이대용 박용선 유인식 이석규 이석구 김수배 김성에 박응수	박중철 표정두 박선영 이재용 이한열 박태영			이태춘	채광석	문갑수 이선우 최재필 최주백 장재완 최우혁 노철승 이승삼 박필호 김용권 이이동 박상구 정연관	32	
	소 계	17	20	1		3	3	17	16	77

복 토 별 코 팀

	노동자	학 생	농 민	빈 민	시 민	재 야	장 기 수	군 경	합계			
노 테 우 정 권	1988	이대건 정경식 김장수 오범근 최운범 장용훈 문용삼 문승면 성완희 송철순 이문철 배중순 최완용 김윤기 김중수 이상남 조정식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최성조 강현중 김중하 이재호	유병진 곽현정 조성만 최덕수 박래전	김길호			고정희 정성규 신영일	유진근 공인두 박창술 문기남	박종근 우인수 양영진	28		
	1989	최완용 김윤기 김중수 이상남 조정식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최성조 강현중 김중하 이재호	남태현 이철규 이내창		정상물 이재식	김병구	함석현	이상물 조용순		21		
	1990	배주영 강민호 이영일 최태욱 최 동 박성호 원태조 오원석	김용갑 신장호 정성목 김수경 심광보 김기훈 최응현		이원기		조영래 김병근	정대철 김병인	박성문	21		
	1991	김봉환 신용길 박창수 윤용하 이진희 석광수 유재관 김치철 권이경	강경대 김영균 천세용 박승희 김귀정 김철수 고재욱 류정하 문승필			이정순 정상순	김기설 김영환 양용산	양재영 김광길 최인정	송종호 남천진 손석용	29		
	1992	임희진 박복실 최성근 이광웅 윤재영	이상렬 박현민		김선호		최성목 오원진	박관수 김대봉 이태영		13		
	합 계	46	26	1	4	3	11	14	7	112		
	김 영 삼 정 권	1993	정운갑 채희돈 정영상 정영부 조경천 고정자 박미경 서영호 김주리 임혜란 최 웅	이경동 한상용	김영자			황인철 성순희	이래선 현승중 권두영		19	
		1994	김성운 김상옥 최성목 김낙성 임종호	이창환 신건수	김순복 손구용			김남주 문익환 이오순 이범영	김광삼		14	
		1995	양봉수 박삼훈 서전근 조수원	장현구		최정환 이덕민			박현채	정종서 강철순	오원택	11
		1996	김시자 유구영 오용철 김왕찬 박문근	노수식 진철원 권희정 황해인 오영권 박동학		신연숙		김말룡	김도한 문한영		15	
1997		홍장길	한상근 류재을 김준배 이형관	최종진			민병일 박순덕	권양섭 진태문		10		
소 계		26	15	4	5		8	10	1	69		
1998		최대림 최영아									2	
년도 이상							권창수 권홍직 변치수 정순직			4		
합 계	94	63	6	9	6	24	105	24	331			

지금도 자원의 둔목설에 의해 하루에도 10여명의 산재자 양산.
 YS 때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구속·수배자가 양산. (노동자의 생산력이 경제회생(몇몇
 재벌 치통)이란 이름하에 희생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법 **년도별로 본**가 즉각하는 경제회생과 민족화
 를 한번에 이룰수 없다고 본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형태 분류

배상·보상에 대한 확실한 구분

<장기수 선생님의 운명과정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되어있지 않음으로 이 자료에서는 제외합니다.>

1998. 5. 22 현재

	분신	할복	투신	타살	음독	단식	목매	의문의 죽음	병사	사고사	
박정희정권	1960년대										
	1970	전태일									
	1971			김진수							
	1972										
	1973							최종길			
	1974										
	1975		김상진					장준하			
	1976										
	1977										
	1978							정범영			
1979			김경숙								
소계	1	1	1	1			3				
전두환정권	1980	김종태		김의기				임기운			
	1981			김태훈					최종철		
	1982							문영수 정성희			
	1983			황정하				이문성 김두환 한영현 최은순 한희철			
	1984	박종만						허원근			
	1985	홍기일 송광영				기혁		우종원			
	1986	박영진 변형진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진성일 강상철		박해정 이경환	김상원	오한섭		신호수 김성수			
	1987	표정두 황보영국 이석구 김수배 박용수 박태영		김성애	박종철 이한열 이석규			박신영 장재환	최우혁 노철승 이승삼 박필호 김용권 이이동 박상규 정연관 이태춘	이순덕	채광석 이재용 김현옥 유인식 이대용 박용선
	소계	17		6	4	2		2	21	2	

희생 ⇒ 학술적 문제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 (호칭)
 호칭은 각자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열사·열사' 라고 부르는건
 어려울것.

영.회 / 돌아가신 분의 가족·혈족에만 한정될수 없다.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열사) 우선 진상규명 이루어져야.

용서는 처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이순간 발민하는 것도 수사기록된거 처벌의 증거가 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특검 / 현재 검찰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입장을 바꾼다. (사랑은 그대로인데)
 현재 검찰체제로 하려면 안하는게 낫다
 특별 검사제 필요. 거족은 계획은 1년 이내 → 증거인멸 위험. (한두산내어)
 계획되지 않으면 불가능 (조사)

⇒ 현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민족정복인가. 지금도 민족 열사가 계속 양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치리를 느끼고 있다.

	분신	할복	투신	타살	음독	단식	목매	의문의 죽음	병사	사고사	
노태우정권	1988	이대건 김장수 최운범 장용훈 성완희 이문철 최덕수 박래진	조성만	양영진	김길호			정경식 오범근 문용섭 배중손 우인수 박종근 고정희	문승면 유병진 신영일 곽현정	송철순 정성규	
	1989	최완용 김윤기 김중수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강한중 김중하 남태현 이재식		김병구	이상남 최성조 정상울			이재호 이철규 이내창	함석현	조정식	
	1990	이영일 최태욱 최 동 박성호 원태조 심광보	김수경 최응현			정성목	이원기	김용갑 박성은	오원석 김기훈 조영래 김병근	배주영 강민호 신장호	
	1991	윤용하 이진희 석광수 김영균 천세용 박승희 김철수 이정순 정상순 손석용 김기철 양용찬		권미경	강경대 김귀정			박창수 송종호 남현진 문승필 김영환	김봉환 신용길	유재관 김치철 고재욱 류정하	
	1992										
	소계	36	1	5	7	1	1	17	20	10	
	김영삼정권	1993	이경동 한상용							황인철 성순희 김영자 장운갑 채희돈 정영삼 정영부 조경천 고정자 박미경 임혜란	서영호 김주리 최 용
		1994	최성목				김성운		임종호	김상옥 김낙성 김남주 문익환 이오순 이범영	이창환 신건수 김순복 손구용
1995		양봉수 박삼훈 서전근 장현구 최정환						조수원	이덕민	박헌재	
1996		김시자 진철원 황해민 오영권 박동학			신연숙 노수석		권희정		유구영 오용철 김왕찬 김말룡	박문근	
1997		한상근			류재울 김준배 민병일 박순덕		홍장길			이형관 최종진	
소계		14			6	2	1	2	1	24	
1998		최대림								최명아	
합계	69	2	12	18	5	1	5	42	47		

<지정토론>

한나라 이재민 → 당을 대표해서 나온것 아니다.
김영삼 정권에서 해결했어야 할 일이지만 3당합당의 신랄한 정박였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한 해명이 불가능 했다.
이제는 국민의 성박이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고 해결되어야 한다.

추징문제 /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스며들 것이다.
의사의 부실이 개념이 좀 맞지 않는다.

법/변화사 출신 국회의원 아니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 [국회내에서 상정되는 법.
- [외부에서

특별 위원회 / → 검사에게 (조사권 유입 (현 체제상 어려움) 강제)
↳ 현재 검찰체제가 아닌 재야 검사를 임용하는 것이 ...
부당한 경우만 검찰이 상관.

명예 회복 / 이것을 만드는 이유.
→ 과거 정권에 비해 여수차원이 아닌 미래의 일도 포함
20p : 꼭 사망이나 사상이 아닌 공적이 있으면 될것.
민족운동 성격규정 / 위원회가 별도로 필요.

국회의원 하면서 법을 다루어 왔지만.

이러한 경우 정국여당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여야 합의 → 찬반 토론후 거수로 제정할 성격이 아니기
[여당 단독 합의. 때문에 정권 여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손석춘 ⇒ 이법에 동참할 한나라 당 Y.

이재오 ⇒ 전원 이법에 서명 X.) ⇒ 배척성정은 영속제한(20) 없어서 제정여
당론으로 채택 어려움.) ⇒ 문제는 없을것.

<종합토론>

김오현 / 331 연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이중 105 명이 독재정권에 의해 희생됐다.
이 법안 통과위해 국회에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
· 이 법의 제정은 민주화운동의 방향성 제시하는 일.
'민족민주 열사' 명칭으로 국회 통과가 어렵지만 이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희생자들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법은 통과돼야.
과 함께

⇒ 사법살인, 양심수, 사상범등에 대한 진상규명

안영현 (안현 원) / (이상) 안중근 의사의 경우 각 나라의 시선이 틀리다 (한국, 일본)

과거 정부는 국민에게 정통성 인정X.
올해 '법' 제정은 과거 역사 형성의 의미 ⇒ 과연 현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법~~ ^{국민}의 의지가 강해야 한다고 했는데 매주 목요일 집회를
그 연루한 몸으로 이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충분히 해오고 있었는데 ...
⇒ DJ에게 직접 상정할 만큼 의지가 있는지...

전국연합) 노승희 / 현정권은 만들어진 법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사용자의 의지가 필요. 실행의 비지 필요.
⇒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인용할 경우 이를 처벌할수 있는 법 제정의 의지
있는가.

유가형 하현 / DJ 정권이 YS 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법이나 정박에 기댈것없이 범칙위나 민주화운동의 정의로운 사람들이 연사를
가려내야 할것이다. 범칙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 답변 <이상숙>
범칙위에 미루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칙위 강화를 요구했다.
이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법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시기안에 이 문제에 대해 위원회 구성해 당론화 시키겠다.
반대.